

수원지방법원 2021. 10. 8 선고 2019가단25314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주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신욱

소송대리인 C

변 론 종 결 2021. 9. 10.

판 결 선 고 2021. 10. 8.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가항 기재 증여계약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철강재 공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철강재를 공급하였고, 소외 회사는 2014. 4. 1. 철강재 공급대금 지급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를 수취인으로 하여 액면금 500,000,000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으며,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C는 당시 소외 회사와 함께 이 사건 약속어음을 공동으로 발행하였다.

나. 원고, 소외 회사 및 C는 같은 날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한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가 담긴 법무법인 E 증서 2014년 제00320호 어음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다. C의 아내인 피고는 2016. 2. 4.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 사이에, 파주시 G건물 H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분양대금 239,000,000원에 분양받되, 1차 계약금 3,000,000원은 계약시에, 2차 계약금 17,000,000원은 2016. 2. 5.까지, 중도금 140,000,000원은 은행 대출금으로, 잔금 79,000,000원은 2016. 6. 10.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C는 ① 2016. 2. 12. F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1, 2차 계약금 합계 2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② 2016. 5. 30. 위 계좌로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 중 29,0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③ 2016. 5. 31. 그 명의의 J은행 계좌에서 액면금 50,000,000원 자기앞수표(수표번호 K)를 출금하였는데, 피고는 2016. 6. 1. 이를 교부받아 F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나머지 잔금으로 위 자기앞수표를 송금하였다(이하 C의 ①, ② 송금행위를 ‘이 사건 순번 송금행위’라고 하고, ③ 교부행위를 ‘이 사건 교부행위’라고 한다).

마.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6. 10. 이 사건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한편 C는 2016. 6. 10. L, M와 사이에, 그 소유의 고양시 일산서구 N아파트 O호(이하 ‘고양시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225,00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5,000,000원은 계약시에, 잔금 220,000,000원(그중 200,000,000원은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함)은 2016. 7. 29.에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L, M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고양시 부동산에 관하여 2016. 7. 29. L, M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사. 원고는 2017. 11. 30. 소외 회사와의 거래를 종료하였고, 최종 수금일인 2018. 10. 4.을 기준으로 한 미지급 공급대금의 액수는 395,840,39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J은행, P은행, I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1년 전에 이미 이 사건 1, 2 송금행위 및 교부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았을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도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민법 제406조 제2항에 의하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고,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일(2019. 10. 25.) 내지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제출일(2021. 4. 15.)로부터 1년 이전에 이 사건 1, 2 송금행위 및 교부행위가 있었고, 그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임을 알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나아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1 송금행위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1 송금행위가 2016. 2. 12.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원고는 당초 'C가 2016. 6. 1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중도금 및 잔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만 주장하다가, 2021. 4. 15.에서야 비로소 'C가 2016. 2. 12.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계약금에 해당하는 20,000,000원을 증여한 이 사건 1 송금행위 역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1 송금행위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 이는 당초의 청구와는 소송물을 달리 하는 별개의 청구로서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가 제출된 2021. 4. 15. 그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 소는 이 사건 1 송금행위가 이루어진 2016. 2. 12.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1. 4. 15.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6. 5. 30. 및 같은 달 31. 2회에 걸쳐 자신의 아내인 피고에게 합계 79,000,000원을 송금 내지 교부한 이 사건 2 송금행위 및 교부행위는 증여로서 C에 대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채권을 가지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C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2 송금행위 및 교부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7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2 송금행위 및 교부행위 당시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약속어음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약속어음금채권은 만기(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로부터 3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2)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8호, 제70조 제1항, 제78조 제1항에 의하면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채권은 만기의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일람출급어음의 지급제시는 발행일로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하며(어음법 제34조 제1항), 그 기간 내에 적법한 지급제시가 없다면 그 기간의 말일에 만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고, 그 때부터 어음채무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0352 판결 참조).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일람출급으로 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달리 원고가 발행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제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약속어음금채권은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일(2014. 4. 1.)로부터 1년이 지난 2015. 4. 1.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바, 그로부터 이미 3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1)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2019. 8. 13. C 소유 유체동산에 관한 압류를 신청하여 2019. 10. 8. 유체동산이 매각되었고, 매각대금으로부터 599,280원을 교부받았음에도 그 과정에서 C가 아무런 이익을 진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C는 이 사건 약속어음채권에 관하여 시효완성 후 시효 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재항변한다.

(2) 살피건대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사람은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한정되는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이 된 사해행위의 수익자는,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사해행위에 의하여 얻은 이익을 상실하고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의 채권이 소멸하면 그와 같은 이익의 상실을 면하는 지위에 있어, 그 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고(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4849 판결 등 참조),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채권을 원인으로 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그 절차에서 채무자의 유체동산 매각대금이 채권자에게 교부되어 그 채무의 일부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강제집행 절차의 진행을 채무자가 알지 못하였다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어음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345 판결 참조), 그 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과가 있음에 지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100098 판결 참조), C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약속어음채권의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상대방(수익자)으로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피고에게 C의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재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약속어음채권이 소멸되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1 송금행위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서영

[별지]

가. 2016. 2. 12. 경 20,000,000원
나. 2016. 5. 30. 경 29,000,000원
다. 2016. 5. 31. 경 50,000,000원

